

2025. 9. 2.(화)
 보도시점 결과 발표(18:00) 이후 배포 2025. 9. 2.(화)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내년 통합돌봄 성공적 실행 준비 박차

-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98개 추가 선정 (131개→229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마포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진구·북구·연제구·기장군(5)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5)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서구(8)
경기도	김포시·광주시·군포시·하남시·오산시·양주시·구리시·의왕시·과천시·가평군·연천군(1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10)
충청남도	공주시·보령시·서산시·계룡시·당진시·금산군·서천군

	· 홍성군 · 예산군(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7)
전라남도	목포시 · 순천시 · 곡성군 · 구례군 · 장흥군(5)
경상북도	김천시 · 안동시 · 구미시 · 영주시 · 영천시 · 상주시 · 문경시 · 경산시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예천군 · 봉화군 · 울진군 · 울릉군(16)
경상남도	통영시 · 사천시 · 밀양시 · 양산시 · 의령군 · 함안군 · 고성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12)
제주도	서귀포시(1)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9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체계 마련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2.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3030)
		담당자	팀 장	박준형 (044-202-3041)
			사무관	이종범 (044-202-3042)



붙임 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 총 229개 [기존 131, [추가 98](#)]

시도 (시군구)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시군구)			
	소계 <A+B+C> 갯수	예산지원형 시범사업<A>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중 	신규 참여 <'25. 3차 공모> <C>
계 (229)	229	12	119	98
서울 (25)	25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16)	종로구, 중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9)
부산 (16)	16	-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11)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기장군(5)
대구 (9)	9	-	서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4)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5)
인천 (10)	10	-	부평구, 계양구(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8)
광주 (5)	5	서구, 북구(2)	남구, 광산구, 동구(3)	-
대전 (5)	5	대덕구, 유성구(2)	중구, 동구, 서구(3)	-
울산 (5)	5	-	동구, 중구, 북구, 울주군, 남구(5)	-
세종 (1)	1	-	세종시(1)	-
경기 (31)	31	부천시, 안산시(2)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광명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18)	김포시, 광주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11)

시도 (시군구)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시군구)			
	소계 <A+B+C> 갯수	예산지원형 시범사업<A>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중 	신규 참여 <'25. 3차 공모> <C>
계 (229)	229	12	119	98
강원 (18)	18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고성군(8)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10)
충북 (11)	11	진천군(1)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10)	-
충남 (15)	15	천안시(1)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5)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9)
전북 (14)	14	전주시(1)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익산시, 진안군(6)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7)
전남 (22)	22	여수시(1)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16)	목포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5)
경북 (22)	22	의성군(1)	포항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16)
경남 (18)	18	김해시(1)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창원군, 남해군(5)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12)
제주 (2)	2	-	제주시(1)	서귀포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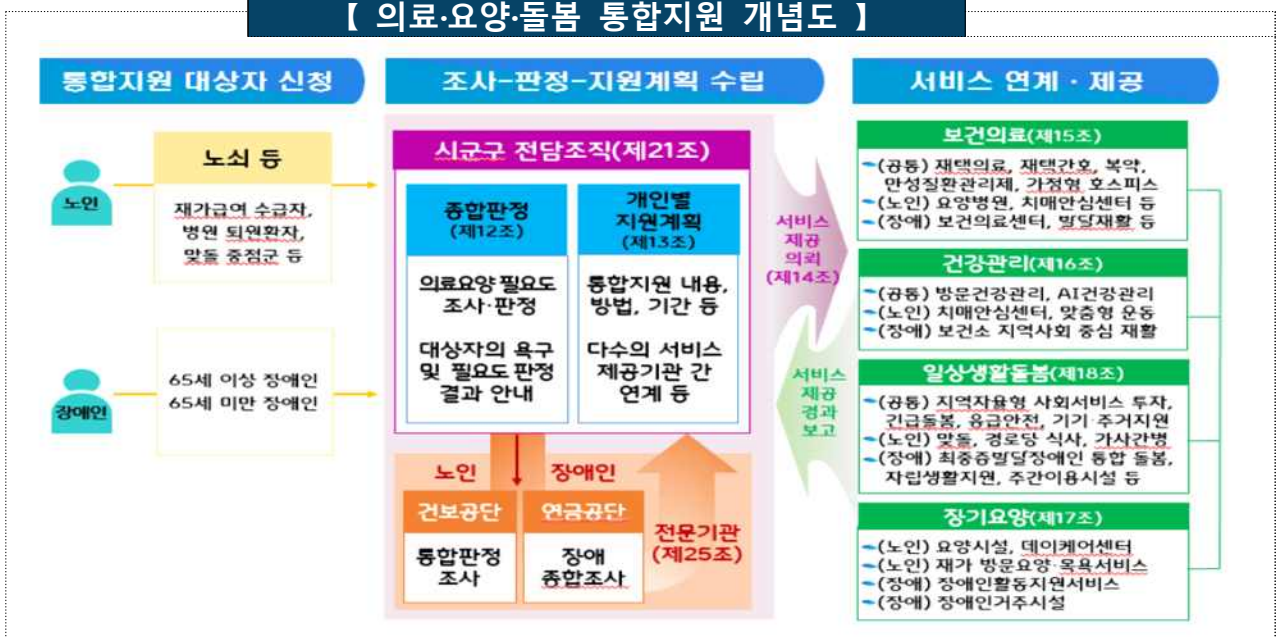
1

통합지원 제도 개요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24.3월 제정)
→ 現 시범사업(229개 지자체) → ‘26.3월 법 시행, 전국 적용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내용)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 (지원절차) 통합지원 ①신청 → ②조사 → ③판정 → ④지원계획 수립 → ⑤통합지원 제공 → ⑥모니터링
- (기반조성) 통합지원 절차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 전담조직에서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통합지원 절차 운영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



2 사업 절차

- ① (신청)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 센터, 건보공단 등에서 신청가능 구조로 전환하여 접근성 제고
- 대상자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읍면동)에 신청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 ② (조사·판정)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및 판정을 위해 조사 체계를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 노인(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국민연금공단)

- (노인) 읍면동·건보 지사에서 사전평가를 실시 → 통합판정을 활용 하여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면밀히 파악 → 적정 서비스군 판정
- (65세미만 장애인) 장애인 종합판정조사*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 조사항목별 평가척도를 통한 서비스 필요도 결정(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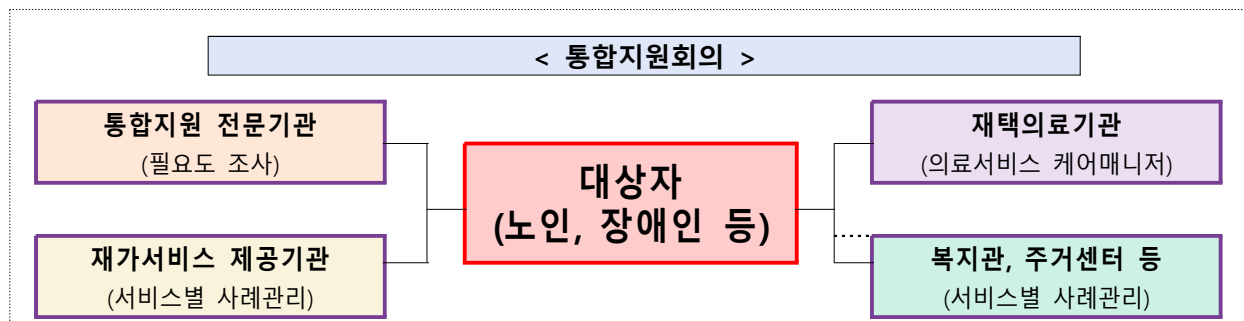
* 보완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활용하여 의료, 건강 등 욕구 확인

** 다만, 65세미만 장애인 통합지원은 지자체와 별도 협의 후 사업진행 예정

- ③ (계획수립·제공)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제공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조정 하는 통합지원회의의 운영 (시군구, 읍면동,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 (역할) 시군구(읍면동)가 마련한 개인별 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종결
 - (계획 승인) 조사 결과·서비스 적합성 논의, 사례회의 등 보완 후 확정
 - (변경·종결) 욕구·상태 변화 확인, 서비스 부적합 시 변경·종결 검토 후 확정

<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 수립 >



- ④ (모니터링) 제공기관별 계획에 따라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및 중단사유가 발생시 종결 실시

* (종결 사유 예시) ①사망, ②병원 입원, ③시설 입소, ④중단의사, ⑤욕구 충족

□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7개 시·군·구)

- (추진배경·목표) 전국 확대 前, 경험과 추진 의지 높은 자체 추진 지자체를 우선 지원(비예산)하여, 표준모델 제공 및 방향성 제시
- (대상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 장기요양재가급여자,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및 장기요양등급외자(A,B), 장기요양 등급판정대기·불인정에 따른 일시적 돌봄필요자, 퇴원환자, 고령장애인
- (사업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적 사례관리, △재가노인 방문 의료서비스 연계·확충,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전담조직 등)
 - *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기존서비스 연계 원칙+부족한 서비스는 지자체가 보충적 개발제공
- (전달체계) 신청·접수·발굴, 방문 조사,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회의, 사례관리 등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
- (지원내용)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및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 (교육)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합동 컨설팅으로 사업방향 설정, 실행계획서 작성 등 지원
 - (협업체계) 통합지원 협업 인력 배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등 정보 이용 지원
 - *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 사업은 '26년 시스템 개선 시까지 수기 관리
 - (조사판정) 본사업에서 활용될 종합판정 체계 구축 및 시범 적용

<예산지원형 및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특성>

예산지원형 (12개 시군구)	지역 내 노인 대상, 의료·돌봄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50% 매칭)
기술지원형 (217개 시군구)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유관 사업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 간접 지원

□ 3차 시범사업 향후일정

- 지자체 교육(9월) → 전담조직 구성 등 지자체 사업준비(9~10월) →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제공(10월~) → 본사업 시행('26.3.27.)
-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